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101호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 예고

2023. 3.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101호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2022.3.3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의 벌크형태로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입 신고 및 검사 절차를 개선하고,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중 식품첨가물 향료 및 정제·가공용 원료에 대해서 계획된 수입물량에 대해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생략하여 신속히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농약과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에 대해 최근 5년간의 검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의 벌크형태로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의 처리절차 등 개선

(안 제3조의2 신설)

- 1) 선박 벌크형태의 수입 농산물이 통관장소가 2곳 이상으로 나뉠 경우 모든 수입신고인이 각각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청에 동시에 사전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함
- 2) 지방청장은 동시 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신고 건이 현장검사, 정밀 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 시 처음 반입되는 통관 장소 관할 지방청장이 검체를 채취 및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든 수입 건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나. 자사제조용 원료(식품첨가물 향료, 정제·가공용 원료)에 대해 서류

검사 및 현장검사를 생략하는 신청절차 마련(안 제7조의2)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을 하거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자가 수입신고하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중 식품첨가물 중 향료 및 정제·가공을 거쳐야만 하는 원료에 대해 연간 계획수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대상 품목이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 이력이 있고,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해당 품목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서류 및 현장검사를 생략하는 절차를 마련

**다. 무작위표본검사 자진취하(반려) 후 재수입신고건 처리방법
명문화(안 제8조)**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자진취하(반려)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도록 처리방법을 명문화

**라.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 명칭 변경
및 품목 조정 (안 [별표1])**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으로 판매가 불가하나 명칭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혼동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22-56호, 2022.8.11.)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알로에(노회)를 삭제

**마.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69종에 대하여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하여 검사항목을 113종으로 조정 (안 [별표3])**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69종 외 부적합이 발생한 농약 45종을 추가하고, 69종 중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는 농약 1종을 제외함

**바.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 조정(안 [별표 4])**

최근 5년간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중국산 리치 및 브로콜리, 브라질산 커피원두, 필리핀산 망고, 미얀마산 동부, 이탈리아산 및 미국산 볶은 커피를 인정범위에서 제외

3.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92호, 입법예고 2022.12.30.~2023.2.9.)의 개정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개정령안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4. 의견 제출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5월 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lee0119@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22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 수입검사관리과, 전화 043-719-22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 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5호, 2022.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선박의 벌크 농산물”을 “선박에 포장되지 아니한 형태로 선적된 농산물(이하 “선박 벌크 농산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동시 사전 수입신고 등) ① 둘 이상의 수입신고인이 공동으로 안전관리하는 선박 벌크 농산물을 2곳 이상의 통관장소에 나누어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인들은 해당 농산물이 처음 반입되는 통관장소의 도착예정일 5일 전부터 각각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동시에 사전 수입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수입신고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구비

서류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계획서(수입신고인별 수입품명, 수입량, 반입장소, 신고기관, 신고예정일 등)
2. 국내 반입 후 수입신고인별 자체검사 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동시에 사전수입 신고를 받은 지방청장은 제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 벌크 농산물의 각각의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검사방법이 다르게 선정된 경우라도 모두 동일한 검사방법을 적용하되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현장검사 순으로 우선 적용하며(서류검사는 제외), 처음 반입되는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검체를 채취(현장검사는 필요시)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면, 동시 사전수입신고를 받은 다른 지방청장은 그 결과로 해당 수입검사의 검사절차를 같음하고 적합여부 등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수입신고인이 공동으로 안전관리하는 선박 벌크 농산물을 각각 수입신고한 경우 하나의 검체를 해당 수입신고 건 전체의 공동 검체로 할 수 있다.

제7조의2제1항 중 “등록한 자가 연간 계획”을 “등록한 자가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에 명시된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으로, “제2호나목”을 “제2호가목”으로, “다목”을 “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및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을 등록하거나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를 한 자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하는 식품첨가물 중 향료 및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의 10)에 해당하는 품목의 연간 계획 수입량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의 서류검사 및 같은 호 나목의 현장검사를 생략받고자 하는 경우, 영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연간 계획 수입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2.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자사제품 제조용 용도에 한함)

제8조제1항제1호 중 “분기별로 정하는”을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을 “식품원료 명칭 외에 생약명이 존재하는 식품원료”로, “(한함)은”을 “(한함)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행규칙 별표9 제2호라목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수입신고인이 취하하거나 지방청장이 수입신고 절차상 하자 등으로 반려한 경우 당초 수입신고 받은 지방청장은 다른

지방청장에게 즉시 문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전산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생략가능), 해당 제품을 다시 수입신고 받은 지방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 식품등에 대해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제목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115개 품목)”을 “식품원료 명칭 외에 생약명이 존재하는 식품원료(114개 품목)”로 하고 본문 중 “알로에(노회)”를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가 접수되어 검사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검사항목

1. 동시다분석 검사대상 : 113종

연번	농약명	연번	농약명
1	니텐피람(Nitenpyram)	58	인독사카브(Indoxacarb)
2	다이아지논(Diazinon)	59	카바릴(Carbaryl)
3	델타메트린(Deltamethrin)	60	카벤다짐(Carbendazim)
4	디노테퓨란(Dinotefuran)	61	카보퓨란(Carbofuran)
5	디니코나졸(Diniconazole)	62	카복신(Carboxin)
6	디디티(DDT)	63	퀴날포스(Quinalphos)
7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64	퀸토젠(Quintozene)
8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65	클로란트라닐리프롤(Chlorantraniliprole)
9	디우론(Diuron)	66	클로로벤주론(Chlorobenzuron)
10	디코폴(Dicofol)	67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11	디클로르보스(Dichlorvos)	68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12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69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13	디페닐아민(Diphenylamine)	70	클로르피리포스-메틸(Chlorpyrifos-methyl)
14	디플루벤주론(Diflubenzuron)	71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15	루페뉴론(Lufenuron)	72	테부코나졸(Tebuconazole)
16	리뉴론(Linuron)	73	테부페노자이드(Tebufenozide)
17	만디프로파미드(Mandipropamid)	74	톨펜피라드(Tolfenpyrad)
18	말라티온(Malathion)	75	톨클로포스메틸(Tolclofos-methyl)
19	메타미도포스(Methamidophos)	76	트리사이클라졸(Tricyclazole)
20	메타미트론(Metamitron)	77	트리아디메놀(Triadimenol)
21	메탈락실(Metalaxyl)	78	트리아디메폰(Triadimefon)
22	메토미노스트로빈(Metominostrobin)	79	트리아조포스(Triazophos)
23	메토밀(Methomyl)	80	트리알레이트(Tri-allate)
24	메톡시페노자이드(Methoxyfenozide)	81	트리플록시스트로빈(Trifloxystrobin)
25	메티다티온(Methidathion)	82	트리플루뮤론(Triflumuron)
26	메티오카브(Methiocarb)	83	티아메톡삼(Thiamethoxam)
27	보스칼리드(Boscalid)	84	티아벤다졸(Thiabendazole)

연번	농약명	연번	농약명
28	부피리메이트(Bupirimate)	85	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
29	뷰타클로르(Butachlor)	86	파목사돈(Famoxadone)
30	뷰프로페진(Buprofezin)	87	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
31	비펜트린(Bifenthrin)	88	퍼메트린(Permethrin)
32	사이목사닐(Cymoxanil)	89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 MEP)
33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90	펜메디팜(Phenmedipham)
34	사이프로디닐(Cyprodinil)	91	펜발러레이트(Fenvalerate)
35	사이프로코나졸(Cyproconazole)	92	펜토에이트(Phenthoate)
36	사이플루트린(Cyfluthrin)	93	펜프로파트린(Fenpropathrin)
37	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94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38	스피노사드(Spinosad)	95	프로클로라즈(Prochloraz)
39	스피로디클로펜(Spirodiclofen)	96	프로티오포스(Prothiofos)
40	스피로메시펜(Spiromesifen)	97	프로파모카브(Propamocarb)
41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98	프로파자이트(Propargite)
42	아세토클로르(Aceto chlor)	99	프로페노포스(Profenofos)
43	아이소프로카브(Isoprocarb)	100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44	아이소프로티올레인(Isoprothiolane)	101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45	아зок시스트로빈(Azoxystrobin)	102	플루벤디아마이드(Flubendiamide)
46	아트라진(Atrazine)	103	플루시트리네이트(Flucytrinates)
47	에토포메세이트(Ethofumesate)	104	플루트리아폴(Flutriafol)
48	에티온(Ethion)	105	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robin)
49	엔도설판(Endosulfan)	106	피리다벤(Pyridaben)
50	오메토에이트(Omethoate)	107	피리메타닐(Pyrimethanil)
51	오쏘페닐페놀(Ortho-Phenyl Phenol)	108	피리미포스메틸(Pirimiphos-methyl)
52	옥사디아존(Oxadiazon)	109	피리프록시펜(Pyriproxyfen)
53	옥시플루오르펜(xyfluorfen)	110	피페로닐부톡사이드(Piperonylbutoxide)
54	이마잘릴(Imazalil)	111	피프로닐(Fipronil)
55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112	헥사코나졸(Hexaconazole)
56	이육-디아이피엔(2,6-Diisopropynaphthalene)	113	헥사플루무론(Hexaflumuron)
57	이프로디온(Iprodione)		

[별표 4]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I. 농·임산물

연번	대상식품	생산국
1	강낭콩	중국
2	기장	중국
3	밀	미국, 호주
4	팥	중국
5	감	중국
6	레몬	미국
7	오렌지	미국, 칠레
8	포도	미국, 칠레
9	커피원두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10	후추	말레이시아
11	망고	태국
12	호박	뉴질랜드, 중국
13	체리	미국
14	월귤(블루베리)/열매	칠레
15	우엉	중국

II. 가공식품

연번	대상식품	제조국
1	초콜릿	네덜란드, 스위스
2	밀크초콜릿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일본
3	연육	중국, 태국,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4	볶은커피	영국, 일본, 독일, 베트남, 스위스, 호주, 말레이시아, 스페인
5	인스턴트커피	미국, 일본
6	위스키	영국, 프랑스, 미국
7	영양강화밀가루	캐나다
8	텍스트린	일본, 중국
9	액상커피	미국
10	조제커피	캐나다
11	준초콜릿	미국, 일본, 프랑스
12	초콜릿가공품	말레이시아, 일본, 캐나다, 호주, 벨기에
13	코코아분말	네덜란드
14	과실주	호주,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15	맥주	독일, 아일랜드, 영국, 중국, 체코, 필리핀
16	당절임	미국
17	개량메주	중국
18	물엿	중국

※ 제4호의 볶은커피는 커피원두를 볶은 것 또는 이를 분쇄한 것으로서 착향을 목적으로 향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Ⅲ. 식품첨가물

연번	대상식품	제조국
1	비타민 C	중국
2	구연산	중국
3	규조토	미국, 중국
4	글리신	일본, 중국
5	아세실팜칼륨	중국
6	인산	중국
7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일본
8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중국
9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	일본
10	과프리카추출색소	인도
11	펙틴	프랑스
12	효모추출물	네덜란드
13	D-자일로오스	중국
14	L-글루탐산나트륨	인도네시아, 중국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사전수입신고의 처리)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선박의 벌크 농산물</u>에 대하여는 보세구역 등에서의 반입전에 현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신고확인증은 수입검사가 완료되고 보세구역 등에서의 반입이 완료된 경우 교부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제3조(사전수입신고의 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선박에 포장되지 아니한 형태로 선적된 농산물(이하 “선박 벌크 농산물”이라 한다)</u>----- ----- ----- ----- -----.</p> <p><u>제3조의2(동시 사전 수입신고 등)</u></p> <p>① <u>둘 이상의 수입신고인이 공동으로 안전관리하는 선박 벌크 농산물을 2곳 이상의 통관장소에 나누어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인들은 해당 농산물이 처음 반입되는 통관장소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각각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동시에 사전 수입신고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라 사전수입신고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구비서류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u></p>

한다.

1. 수입신고계획서(수입신고인별 수입품명, 수입량, 반입장소, 신고기관, 신고예정일 등)

2. 국내 반입 후 수입신고인별 자체검사 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동시에 사전수입 신고를 받은 지방청장은 제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 벌크 농산물의 각각의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검사방법이 다르게 선정된 경우라도 모두 동일한 검사 방법을 적용하되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 현장검사 순으로 우선 적용하며(서류검사는 제외), 처음 반입되는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검체를 채취(현장검사는 필요시)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면, 동시 사전수입신고를 받은 다른 지방청장은 그 결과로 해당 수입검사의 검사절차를 같음하고 적합여부 등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검사용 검체의 채취기준 등) ①·② (생략)

제6조(검사용 검체의 채취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해당하는 품목의 연간 계획 수입
량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 9 제2
호가목의 서류검사 및 같은 호
나목의 현장검사를 생략받고자
하는 경우, 영업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청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
수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
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연간 계획수입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2.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자사제품
제조용 용도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계획 수입
량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1
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
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 신청
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 9 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에 따라 서류
검사 및 현장검사의 생략 대상
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적합

③ 제1항 및 제2항-----

-----.

④ ----- 제1항 및 제2항--

건조한 것에 한함)은 「대한민국약전」 또는 「대한민국약전 외한약(생약)규격집」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검사하며, 이 경우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중점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⑤ (생 약)

<신 설>

----- 한함)는 -----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행규칙 별표9 제2호라목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수입 신고인이 취하하거나 지방청장이 수입신고 절차상 하자 등으로 반려한 경우 당초 수입신고 받은 지방청장은 다른 지방청장에게 즉시 문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생략가능), 해당 제품을 다시 수입신고 받은 지방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 식품 등에 대해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